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1547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구합66429 판결
변 론 종 결	2021. 9. 3.
판 결 선 고	2021. 10.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 중 취득세 121,093,670원 부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쪽 제2행의 마지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이 사건 쟁점 조항에서 이 사건 개정 조항으로 개정한 취지에 대하여 납세자들의 권익향상과 신고납부에 따른 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또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마196 결정 참조),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2016. 1. 1.) 부칙 제3조는 "제53조의2 개정 규정(이 사건 개정 조항)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입법자는 이 사건 개정 조항을 소급입법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 1. 이전에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실제 납세해야 하는 세액이 0원인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고, 존재하지 않을 납세할 세액에 대한 불필요한 신고를 매개로 하여 조세의 가능성을 창출하는 법령 개정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한 것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었으며,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적음에 비하여, 감면되기 전 금액에서 100분의 20의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어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익은 매우 큰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종전 조항의 시행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되어 산출세액이 0원인 경우 이 사건 종전 조항의 무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을 갖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정된 법령인 이 사건 쟁점 조항의 무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